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-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·신설하고,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(안 제2조제2호)

-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

나. 사용온도범위 확대(-10℃ 이상 45℃ 이하로 제한 → 5℃ 단위로 확대 가능)

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(안 제3조제8호, 제13호)

다. 진동시험 (고정진폭 → 가변진폭 후, 60Hz 2시간) 강화 (안 제8조)

라.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, 강화 및 신규 도입

- 중탄산칼륨 함량(92 → 90wt% 이상) 완화 (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)
- 흡습율시험 시험일(4 → 20일) 강화 (안 제11조제2항제4호)
-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(pH 6~9) 규정 (안 제11조제3항제7호, 제4항제4호)

마.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(안 별표 2)